



12/31/2019-12/30/2020 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

New York City	
<p>대규모 고용주(직원 11 명 이상)</p> <p>최저 임금 \$15.00</p> <p>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2.50</p>	<p>소규모 고용주(직원 10 명 이하)</p> <p>최저 임금 \$15.00</p> <p>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2.50</p>
Long Island 및 Westchester County	그 외 나머지 뉴욕 주
<p>최저 임금 \$13.00</p> <p>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19.50</p>	<p>최저 임금 \$11.80</p> <p>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17.70</p>

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혹은,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시려면

www.labor.ny.gov/minimumwage 를 방문하거나 다음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:

(212) 775-3649.

Apparel Industry Task Force,
75 Varick Street, 7th floor, New York, New York 10013 로

편지를 보내거나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임금을 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공제액 및 수당:

- **식사와 숙소** -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제공한 식사와 숙소에 한해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적용 금액과 요건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임금 규정 및 요약에 나와있습니다.
-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기타 규정:
 - **안전** - 고용주는 지역, 주 및 연방 정부의 건강 및 안전 법률과 화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 화재 비상구는 업무 시간 중에는 잠겨있지 않아야 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.
 - **가내수공업** - 공장에서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가면 안됩니다. 어떠한 일거리도 집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배분되어서는 안됩니다.
 - **등록** - 고용주는 노동부(Department of Labor)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고용주는 매년 발급되는 등록증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.

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 임금:

- **초과 근무 수당** - 주당 40 시간(상주 직원의 경우 44 시간)이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임금의 1/2 배이어야 합니다(상기에 명시된 초과 근무 수당 미만일 수 없음).
예외: 주급이 최저 임금의 75 배 이상인 봉급(일정급여)을 지급 받는 전문직 근로자 또는 임원 및 관리 직원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.
- **출근 수당** - 근무일정대로 출근했는데 고용주에 의해 조기 퇴근이 지시되었을 경우, 해당 조기 퇴근일에 대해 최저 임금이 적용된 시간외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**총 근무지 체류 시간** - 하루 근로 시간이 10 시간이 넘을 경우, 그 날에 대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저 임금 1 시간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.
- **유니폼 관리** - 근로자가 자신의 유니폼을 직접 세탁할 경우, 추가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급 금액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